■ (해양경찰청) 범죄수사규칙 [별지 제186호서식]

제 호
수 신 :
제 목 :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신청

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응급조치 후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후승인의 청구를 신청하니 이를 조속히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행 위 자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	직 업	
	주 거	
	법정대리인	
상 대 방	성 명	
	주 소	
	직장(소재지)	
긴급응급조치	일시 · 장소	
	내 용	[□]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(제1호)
		[□]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(제2호)
	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	[] 상대방 [] 상대방의 동거인 [] 상대방의 가족
	집행자의 관직 · 성명	
	기 간	~ ※ 최장 1개월
긴 급 응 급 조 치 결 정 근 거		□ 사법경찰관 직권 □ 상대방 □ 상대방의 법정대리인 □ 신고자
스토킹행위의 요지 및 긴 급 응 급 조 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		
비 고		

소속관서

사법경찰관 *성명*